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서영교·권칠승·박희승

이해식 • 이연희 • 박홍배

김종민 • 안호영 • 강유정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74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동안 경제규모와 물가는 크게 상승하였음. 근로소득자의 소비 를 진작시키고 대기업·대자산가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구간 기준을 13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20만원~74 만원에서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4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4만원"을 "100만원"으로, "66만원"을 각각 "8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6만원"을 "85만원"으로, "50만원"을 각각 "6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0만원"을 "60만원"으로 한다.

공제액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10만원+(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 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			
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 출세액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 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20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00만원 초과 110만원+(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	2		
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	1		
하인 경우: <u>74만원</u>	<u>100</u> 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	2		
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u>74</u>	<u>100</u>		
<u>만원</u> - [(총급여액 - 3천 30	만원		
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	85 박원		

우에는	66만원으로	하다
1 1 1	ひしてモニエ	ĭ! –

-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 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u>66만</u> 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u>50</u>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u>50</u> 만원으로 한다.
-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u>50만원</u> - [(총 급여액 - 1억2천만원) × 1/ 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으로 한다.

③ (생략)

	<u>8</u> 5	<u> 5만원</u>	
3.			
			<u>85만</u>
	<u>원</u>		
			<u>60</u>
	<u>만원</u>		<u>60</u>
	만원		
4.			
		<u>60만원</u>	
3) (현행과	같음)	